

애널즈 성폭력 사건

비상대책위원회

☎120-749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 / 전화 2123-3645 /
담당 이화여자대학교 여성위원회, 연세대학교 총여학생회

문서번호 : 제2004-01-07호

시행일자 : 2004.1.7 (수)

수 신 : 연세대학교
성폭력 대책위원회

참 조 :

선 결			지 시	
접 수	일자 시간		결 재 · 공 람	
	번호			
처리과				
담당자				

제 목: 애널즈 성폭력 사건에 대한 재심의 요구안

1. 애널즈측과 가해교수의 사과문은 반드시 이화인과 연세인들에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사과문 공개는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존재감은 없으나 분명 존재하고 있는 성폭력 사건을 가시화하는 작업이자,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성폭력에 대한 예방의 효과를 가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성폭력 가해자의 사과문을 받아보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일이기도 합니다. 애널즈 성폭력 사건의 최초 신고인은 여성위원회의 일원이 아니라 한 이화인이었으며, 현재도 수많은 이화인들이 이 사건에 대해 불쾌해하며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화는 여성공간으로서 끊임없는 남자 대학생들의 공격의 대상이 되어왔습니다. 대동제 때마다 반복되었던 고대생집단성폭력을 비롯하여 연세대 익명게시판의 공대 비하 사건, 한양대의 장문편지 사건, 서울대 단체미팅 제안 사건 등이 바로 그 예입니다. 이화인들에게 연세대 애널즈의 성폭력 사건도 이런 일련의 사건들과 같은 연속선상에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사과문 공개는 이런 유사 사건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연세대학교 성폭력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는 사과문을 공개하는 것이 아닌, 오직 열람만 할 수 있도록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연세대학교의 명예가 실추될까봐 두려워서' 라고 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폭력 대책위원회는 '학교의 이미지 관리를 하는 곳' 이 아닌, '성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곳' 입니다. 대책위원회가 맡은 역할에 충실하다면, 대책위원회의 입장에서 무엇을 더 중요시 해야할지 판단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2. '언어적 성희롱' 이 아닌, '언어적 성폭력' 으로 명명되기를 요청합니다.

대책위원회는 이번 애널즈 사건을 '언어적 성희롱' 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그렇지만 9대 이화여성위원

회와 16대 연세대학교 총여학생회는 대책위원회에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성희롱’ 이고 무엇이 ‘성폭력’ 인지요. 이를 나누는 기준은 과연 누가 어떻게 정한 것인지요. 피해자가 보기에 ‘성희롱’ 은 ‘가해자의 성기삽입’ 만을 ‘성폭력’ 으로 바라보는 기존의 사회통념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명명입니다. 그러나 실제 적으로 성에 관련된 폭력은 성기 삽입만이 아닌 다양한 경우들로 존재합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성기 삽입의 유무와는 무관하게 성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 때 ‘성희롱’ 이라는 명명은 성폭력 사건에 경중을 둠으로써 많은 피해자들의 경험을 삭제합니다. 피해자들은 자신의 고통이 분명 ‘성’ 을 매개로 하는 어떠한 ‘폭력’ 에서 기인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성폭력이 아닌 ‘희롱’ 이라는 명명을 부여받아야 할 때 큰 무력감을 느낍니다. 애널즈측의 문제기사는 일회적, 우발적으로 여성을 ‘희롱’ 한 사례가 아니며 여성에 대한 일관된 가부장적 관점을 가지고 구체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많은 여성과 이화인들에게 수치심을 일으킨 폭력적 사건입니다.

대책위원회에서는 이미 이 사건에 대한 연세 애널즈측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부분에 있어 피해자가 ‘사소한’ 성희롱 사건을 성폭력 사건으로 ‘확대해석’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닌지요. 그러나 연세대학교의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따른 규정’¹⁾만 살펴봐도, ‘개인의 자유로운 성적 결정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든 신체적·언어적·정신적 폭력’ 을 ‘성폭력’ 으로 정의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번 애널즈 사건은 마땅히 ‘언어적 성폭력’ 으로 재명명 되어야함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3. ‘적절치 않은 언행’ 이 아닌, ‘주임교수의 2차가해’ 로 명명되기를 요청합니다.

대책위원회는 가해 교수의 행동에 대해 ‘적절치 않은 언행’ 으로 명명하였습니다. 그러나 가해교수의 언행은 애널즈의 성폭력 사건과 이어져있는, ‘또 하나의 성폭력’ 이었습니다. 가해교수는 "이번 기회를 통해 연대와 이대 사이에 구름다리를 놓자"라든지 "너희가 학생이나, 학생이 버릇없게 뭐 하는 짓이냐"라는 등의 언어적 성폭력을 서슴지 않았으며, 주임교수의 지위를 이용하여 애널즈 명의의 사과문이 나오는 것을 적극적으로 방해하였습니다. 이러한 언행은 가해교수가 애널즈 사건을 성폭력으로 인지하고 있지 않으며, 사건의 해결 의지는커녕 오히려 사건 해결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가 되었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심각한 가해가 ‘적절치 않은 언행’ 이라는 명명으로 인해 ‘절차상의 어긋남’이나 ‘서로간의 감정적인 언행’ 정도로 치부된다면 대책위원회와 피해자가 생각하는 사건의 본질은 흐려질 것입니다. 사건 해결 과정에서 교수가 개입되지만 않았더라도, 이 성폭력 사건은 이렇게 오래 가지 않고 비대위 차원에서 이미 해결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피해자는 이를 ‘주임교수의 2차 가해’ 로 재명명하길 촉구합니다.

4. 이에 9대 이화여성위원회와 16대 연세대학교 총여학생회는 애널즈 성폭력 사건에 대해 재심의를 요청합니다

1) 제2조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성폭력이라 함은 개인의 자유로운 성적 결정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말한다.
② 제 1항의 성폭력은 교육,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교원, 직원, 또는 학생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교육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한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교육상 또는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포함한다